

■ 최신 판례 ■

[헌법] “7만원 부정수급을 이유로 2억원을 반환하도록 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헌 결정”

정원 변호사 | 구나영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A병원은 2007년 8월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병원경영과정 I”을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 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2008년 1월 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훈련비용 약 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고용보험법은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병원경영과정 I”을 이수한 직원들 중 B직원은 실제로는 위 훈련과정을 대리 수강하였기 때문에, B직원은 훈련비용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A병원은 B직원의 훈련비용 75,720원을 포함하여 훈련비용 500만원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A병원이 B직원의 훈련비용 75,720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2011년 1월 21일 A병원에 대하여 ① 부정수령액 75,720원의 반환명령, ② 부정수령액 상당액의 추가징수 처분, ③ 부당하게 지원받은 날인 2008년 1월 22일부터 2009년 1월 21일까지 1년간의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고, 그 지급제한기간 동안 이미 지급된 2억 3,993만 6,930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병원장은 위와 같은 지급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지급제한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헌법소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i) 지원을 제한하거나 (ii)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iii)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 제1호 및 제25조제4항 제1호를 준용한다.

구 고용보험법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비 등을 지원받은 자에게 3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처분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 ①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원 자체의 제한(지급제한조치)을, ②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의 반환(반환명령)을 각각 명하는 한편, ③ 여기에 더하여 징벌적인 의미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 상당액을 추가로 징수하게 하고 있습니다(‘추가징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i) 지원의 제한’과 ‘(ii)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②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노동청장은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받은 날인 2008년 1월 22일부터 2009년 1월 21일까지 1년 동안”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그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전부 반환하도록 명한 것입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헌법 제75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서만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할 수 있으며 포괄적으로 입법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헌법 제75조). 즉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i) 지원의 제한'과 '(ii)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임사항 중 '(ii)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회수”를 의미함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나, '(i) 지원의 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간이나 정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고 그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원받은 금액 중 얼마까지 반환하여야 하는지 그 대강의 내용을 법률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한 것입니다.

4.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고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 외에도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현재 상당수 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이미 법원에서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었습니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장래를 향하여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을 정한 것임에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지원금 지급제

한의 기산일을 처분일이 아닌 지원금 등을 받은 날 또는 지급신청을 한 날"로 정함으로써 과거로 소급하여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법률의 위임범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3276, 2011구합14289, 2011구합33976, 2011구합15336, 2011구합20017, 2011구합1485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725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440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누39563, 2011누4549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누4428 판결 등).

이번 당해 사건에서도 A병원은 2011년 1월 21일 지급제한처분을 받았는데, 처분일(2011년 1월 21일)이 아닌 부정수급일(2008년 1월 22일)로부터 1년 동안 소급하여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과거 1년 동안 정당하게 지원받은 지원금 전부(2억 3,993만 6,930원)를 반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업주의 부정수급액이 고작 7만원 정도였음에도 2억원이 넘는 지원비용을 모두 반환하라는 명령은 가혹한 제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에 법률이 예정한 제재는 부정수급한 사업주에 대하여 "장래를 향하여 일정 기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1년 동안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지급제한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탄력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을 것인데, 관할관청의 지원 결정을 신뢰하여 해당 훈련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그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을 실제로 훈련비 명목으로 사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뒤늦게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관련 사건들에서도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므로 지급제한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5. 다운로드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0 결정](#)